

WTO/DDA협상 NAMA분야의 목재류 관세감축 영향 분석
- 잠정타협안을 중심으로 -

이성연* · 정병헌
국립산림과학원

Impacts of Tariff Reduction of Timber Products in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on WTO/DDA Negotiations in Korea
- based on the tentative agreements of WTO/DDA Negotiations -

Seong Youn Lee* and Byung-Heon Jung

Division of Forest Economics,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Seoul 130-712, Korea

요 약: 본 연구는 WTO/DDA협상 타결을 위해 2008년 7월에 개최된 주요국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잠정타협안중 주요 논의 동향, 주요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였으며,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NAMA) 세부원칙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 및 이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급영향을 분석하여 금후 우리나라의 WTO/DDA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잠정타협안중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세부원칙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 분석 결과, 선진국 지위시 제재목과 단판의 경우 2008년 실행세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양허품목인 합판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관세감축을 2008년 실행세율의 절반 정도로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감축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재목과 합판, PB, 섬유판 등 목질패널류를 대상으로 관세인하에 따른 품목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선진국지위시 목재류의 품목별 수입량 증가가 0.8%~13.3%로 나타났으며, 개도국지위(적용계수 22)시에는 0.8%~44.3%까지 품목별 수입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ore issues addressed in the tentative agreement of WTO ministerial meetings held to finish WTO/DDA negotiations in Geneva in July 2008.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changes in tariff reduction on timber products, and their influence on demand and supply of the items according to the modality of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strategy formulation of our country for further WTO/DDA negotia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will not be significant changes in the tariff on sawnwood and on veneer sheets, however, the tariff on plywood need to be cut by around 50% from the applicable tariff rates of 2008 on condition that our country is in the position of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the item of plywood is expected to be influenced greatly according to the change in tariff reduction. From the analysis of influence of tariff reduction on the demand and supply of timber products including sawnwood and wood based panels, such as plywood, particleboard, and fiberboard, the import quantities of the items are expected to be changed from 0.8% to 13.3% if our country is in the position of developed countries, however, they are expected to decline by 0.8%~44.3%, if our country is in the position of developing countries (22, coefficient for developing members).

Key words : WTO, NAMA, tariff reduction, applicable tariff rates, timber products, tentative agreements

서 론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한 DDA협상 각료선언문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으

로 출범한 WTO/DDA협상은 당시에는 2005년 1월 1일 협상을 타결하기로 하였지만 협상이 시작된 이후 당초 합의 시한을 넘겨 7년이 지난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간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관세감축, 농업 보조금 감축에 대해 미국, EU와 브라질·인도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 등 이해 관련 그룹들 간에 주

*Corresponding author
E-mail: leeferas@forest.go.kr

요 핵심쟁점에 대한 커다란 입장 차이로 여러 차례의 교착과 진전이 반복되면서 아직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관세 및 농업보조금 감축 등에 대한 주요국간의 이견으로 2006년 7월에 중단된 WTO/DDA협상은 2007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26개국 통상장관들의 DDA협상 정상화 합의를 계기로 DDA협상이 공식 재개되었다. 2008년 들어 미국, EU, 브라질 등 주요국들은 WTO/DDA협상의 연내 타결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져 7월에 3차 수정안이 배포되면서 회원국들은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08년 7월 21일부터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주요국간에 논의한 결과, 핵심 이슈에 대해 잠정타협안¹⁾이 도출되었으며, 이후 주요 7개국간 계속되는 논의로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았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7월 29일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후 WTO/DDA협상은 2008년 7월말 소규모 각료회의 실패 이후 소강상태에서 깨어나 WTO 회원국들간에 DDA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 모멘텀이 이어져야 한다는 시급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주요 핵심쟁점에 대한 소규모 고위급 협의를 필두로 협상의 전면 재개가 모색되었다. 이에 따라 WTO 사무국에서는 9월에 개최된 주요국 대사급 회의에서 2008년 말까지 NAMA분야²⁾(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고, 협상 그룹 의장 중심의 협상 재개가 발표되면서 DDA협상은 공식적으로 재개되었으며, NAMA분야에서는 2008년 10월에 새 의장이 선출되었으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WTO/DDA협상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WTO협상 시장접근분야와 보조금분야로 구분하여 시장접근분야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임산물교역추이, 주요국의 실행 및 양허관세율, 쟁점사항별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전략 등을, 보조금분야에서는 WTO 협정 보조금 및 국내보조금 체계, 임업 및 임산업 보조금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임업 및 임산위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쟁점사항별 대응논리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주린원 등, 2001; 이성연 등, 2002). WTO/DDA협상의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과 농업협상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협상과정에서 예상되는 결과에 따른 임업부문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석현덕 등, 2004). WTO/DDA협상이 타결될 경우 UR협상 때보다는 더 큰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WTO/DDA

협상에 따른 품목별 · 산업별 피해액과 과급효과를 분석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DDA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장우환 등, 2005). 그러나 이후 WTO/DDA협상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모델리티에 의한 임산물관련 영향분석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진행된 바 없었으나 2007년 7월 17일 WTO/DDA협상의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이 제안한 세부원칙에 의한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를 분석하여 제시된 바가 있다(이성연 등,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WTO/DDA협상 타결을 위해 2008년 7월에 개최된 주요국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이 제안하여 회원국들간에 합의된 잠정타협안 세부원칙을 중심으로 주요 논의 협상 동향,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고 이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품목의 생산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급후 우리나라의 WTO/DDA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는 목재류가 포함되어 있는 NAMA분야의 주요 핵심쟁점 사항인 관세인하공식, 분야별 무세화, 개도국 우대조치 등을 비교하고, 관세인하공식에 의한 목재류의 관세감축 변화 및 이에 따른 생산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제재목, 합판, PB, 섬유판 등 HS 10단위 246개 목재류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품목별 적용 관세는 모든 품목을 양허하기로 한 제6차 홍콩각료회의 선언문에 따라 기존의 양허품목에 대해서는 협정관세율을, 미양허품목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14일에 적용한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가 임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 7월 29일에 주요 7개국(G-7; 미국, EU, 인도, 브라질, 호주, 일본, 중국)간에 도출된 잠정타협안의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지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잠정타협안에 의한 품목별 관세 변화를 현행 실행 관세율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관세인하에 따른 주요 품목별(제재목, 합판, PB, MDF)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제재목, 합판, PB, MDF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한 선행연구의 탄성치(주린원 등, 2007)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실

¹⁾ 2008년 7월 10일에 배포된 제3차 의장 수정안 중 주요국간에 합의된 것을 말한다.

²⁾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NAMA)는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분야에 대해 관세감축, 미양허품목의 관세 처리, 비관세 장벽 등을 해결하는 협상으로 공산품, 임산물,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다. 임산물 중 원목, 제재목, 합판, 목제품 등의 목재류, 석재류가 이 분야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밤, 잣, 대추 등 단기소득임산물은 농산물에 포함되어 농업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행 관세율의 변화에 의한 가격변화율을 구한 후, 해당 품목의 2003년~2005년까지 3년간의 평균 가격을 이용하여 관세인하에 의한 가격 하락분을 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탄성치 및 2003~2005년 동안의 평균 가격과 소비량 및 생산량을 이용하여 관세인하에 의한 수급 물량의 증감분을 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들 통계치와 예측치를 이용하여 실행관세율의 인하가 수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세인하에 의한 가격변화율은 $\{(관세인하 후 관세포함수입단가)/(관세인하 전 관세포함수입단가)-1\}$ 에 의해 계산하였다. 즉,

$$\Delta P = \frac{t-t_0}{100+t_0} \times 100$$

으로, 여기서 ΔP 는 가격변화율(%), t_0 는 현행 실행관세율(%), t 는 협상타결 후 최종 실행관세율(%)을 나타낸다.

결과 및 고찰

1. WTO/DDA협상의 최근 동향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DDA³⁾(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은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설립 이후 9번째 협상이며, 1995년 WTO 출범 이후로는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이다(강문성 등, 2005). DDA협상 의제는 크게 시장개방, 규범 그리고 기타 분야 등 3개 범주로 구분되며, 주요 협상 의제는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개발, 지적재산권, 무역과 환경, 분쟁해결 양해 등 9개 의제이다. 농업분야는 서비스 분야와 함께 2000년부터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기설정의 제로 규정되어 있었다. 협상의제 중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서비스 등이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시 2004년말 타결을 목표로 출범한 DDA협상은 관세 및 농업보조금 감축 등에 대한 G6(미국, EU, 브라질, 인도, 일본, 호주) 각료회의 개최를 통해 주요 핵심쟁점에 대한 타협이 시도되었으나 주요국간 절충이 어려워지자 WTO

사무총장은 'DDA 모든 분야에서의 협상 중단(suspend)'을 2006년 7월에 선언하였다. DDA협상의 세부원칙 합의·도출을 가로 막고 있는 핵심쟁점은 소위 '삼각쟁점(Triangle Issues)'으로 불리는 농업과 NAMA에서의 관세 감축 폭과 농업보조금의 감축 폭에 대한 주요국간의 입장 대립이다. 이러한 삼각쟁점은 DDA협상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과 EU, G20⁴⁾ 등 3대 핵심 세력의 이해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특히 각 세력간에 쟁점별로 공세적 입장과 수세적 입장이 서로 얽혀 있어, DDA협상 전체의 합의도출이 어렵게 되었다. DDA협상 중단 주요 원인은 미국이 EU와 브라질, 인도의 무역왜곡 농업보조금의 추가감축 요구에 대해, EU의 농산물 관세인하 및 TRQ 확대폭 미흡과 개도국의 과도한 특별품목 요구로 상호 입장이 상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2006년 11월 WTO사무총장의 정상화 발언을 계기로, 2007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WEF(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소규모각료회의에서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DDA협상 재개를 합의하면서 2월부터 DDA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협상타결을 목표로 다자간 협상과 G4간 소규모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DDA협상은 주요국간에 상호 입장이 서로 얽혀 있는 가운데 NAMA분야 의장의 세부원칙 초안이 배포되면서(2007.7.17) 의장 주도하에 다자 협상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2008년 들어 미국, EU, 브라질 등 주요국들은 DDA협상의 연내 타결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를 반영하여 2008년 2월에 세부원칙 수정안, 5월에 2차 수정안, 7월에 3차 수정안이 배포되었다. 이후 회원국들은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08년 7월 21일부터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원칙 합의를 모색하였다. 회의 초반에는 주요국간 의견 대립으로 타결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거듭 논의한 결과, 핵심 이슈에 대해 잠정타협안이 도출되었으며, 이후 주요 7개국간 계속되는 논의로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았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7월 29일 협상이 결렬되었다.

³⁾ DDA협상은 UR협상 결과 달성된 시장접근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2001년 도하각료회의를 통해 시작된 New Round이다. DDA협상은 출범 당시(2001.11.) 142개국이었으나, 이후 중국, 베트남, 통가 등 11개국이 가입하여 2009년 2월 현재 회원국수는 153개국이다(<http://www.wto.org>). 이전 라운드와 달리 WTO 제4차 각료회의가 도하개발아젠더로 정해진 배경은 당시 선진국들은 '뉴라운드', '밀레니엄라운드'로 부르자는 입장인데 반해, 홍콩,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개발라운드'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개최국인 카타르는 '도하라운드'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뉴라운드의 공식명칭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당시 WTO 사무총장(마이크 무어)이 '도하개발아젠더'로 부를 것을 제안하여 이것이 2001년 11월 15일 출범한 뉴라운드 협상의 공식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당시 개도국들은 이전까지의 다자무역협상에서와 달리 단순한 시장개방 확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새롭게 출범하는 뉴라운드에서는 반드시 개도국의 경제발전이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다. 따라서 뉴라운드는 이와 같은 개도국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도하개발아젠더'로 정해졌다(이재기, 2005).

⁴⁾ G20은 2003년 멕시코 각료회의 개최 직전에 브라질과 인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수출개도국그룹으로 주로 선진국의 농업보조와 관세의 철폐 내지 대폭 감소를 주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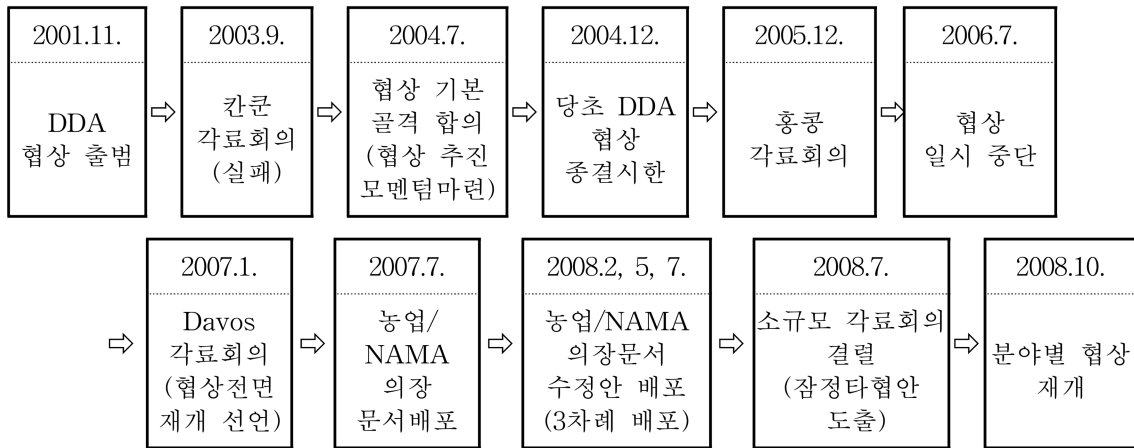


그림 1. WTO/DDA협상의 경과.

이후 DDA협상은 2008년 7월말 소규모 각료회의 실패 이후 소강상태에서 깨어나 회원국들간에 DDA협상을 중단하자는 요구가 없는데다가 DDA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 모멘텀이 이어져야 한다는 시급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주요 핵심쟁점에 대한 소규모 고위급 협의가 개최되면서 협상 재개가 모색되었다. 이에 따라 WTO 사무국에서는 9월에 개최된 주요국 대사급 회의(HODs; Heads of Delegations)에서 2008년 말까지 NAMA분야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고, 협상 그룹 의장 중심의 협상 재개가 발표되면서 DDA협상은 공식적으로 재개되어 10월에는 NAMA분야의 새 의장이 선출되는 등 DDA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12월 7일 제4차 의장수정안이 배포되면서 미국, 인도, 중국간 절충안 마련을 위해 집중적인 타협이 모색되었으나 결국 실패되면서 2008년내 NAMA 세부원칙 도출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DDA협상 자체가 위기에 빠지거나 WTO 중심의 다자간무역체제가 큰 손상을 입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서진교, 2008).

DDA협상은 2008년내 타결의 무산으로 2009년초부터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 EU의 집행부 교체, 인도의 총선 등 주요국의 국내 정치 일정, 결렬된 협상의 추진력을 회복하고 주요국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함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논의는 2009년 하반기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잠정타협안의 NAMA분야 주요 쟁점

스위스 제네바에서 2008년 7월 21일부터 열린 주요국 각료회의에서 선·개도국별 관세감축공식 적용계수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 합의한 잠정타협안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인 분야별 자유화(Sectoral liberalization)에 대한 미국과 인도, 중국간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세

부원칙 도출에 실패하였다.

NAMA분야에서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관세인하공식, 분야별 자유화 및 개도국 우대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관세 인하공식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관세인하와 함께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이 분야별 자유화이다. 분야별 자유화는 공식에 의한 일반 관세감축에 추가하여 특정 공산품 분야를 설정해 관세를 철폐하는 협상인데,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참여한 입장 대립으로 타협에 실패하였다.

1) 관세인하공식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에서는 모든 개별 품목에 대해 공식을 이용하여 관세를 인하하기로 하되, 관세인하공식으로는 스위스공식(Swiss Formula)을 사용하기로 홍콩각료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 6월의 2차 의장초안에서 변형된 스위스 공식(복수의 계수)을 적용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즉, 스위스공식은 높은 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관세 감축 방식의 하나로 선·개도국별 적용공식은 아래와 같다.

$$\text{선진국 적용 공식: } t_1 = \frac{A \times t_0}{A + t_0}$$

$$\text{개도국 적용 공식: } t_1 = \frac{B \times t_0}{B + t_0}$$

A = 선진국 적용계수,

B = 개도국 적용계수,

t₀ = 현재 양허 관세율,

t₁ = 타결 이후 최종 세율

이번 잠정타협안에서는 관세인하공식 적용계수의 크기를 선진국은 8로 결정되었으며, 개도국은 20, 22, 25중 선택하도록 하되 그에 상응한 신축성을 허용하고 있다. UR 타결시 미양허한 품목은 이번 협상에서 모두 100% 양허 하되, 2001년 MFN⁵⁾ 실행세율에 일정한 상수를 합산하는 방식(constant non-linear mark-up)⁶⁾이 채택되었으며, mark-

표 1. 개도국의 관세감축 적용 계수 및 우대조치.

적용계수	우대 조치(A, B 중 선택)			
	일반감축률의 50% 적용(A)		감축 면제 (B)	
	세번 수 (%)	해당세번 수의 수입액 제한(%)	세번 수 (%)	해당세번 수의 수입액 제한(%)
20	14	16	6.5	7.5
22	10	10	5	5
25	0	0	0	0

up 수준으로 이번 잠정타협안에서는 25를 적용하기로 합의되었다.

한편, 개도국 신축성과 연계한 우대조치는 표 1과 같다. 즉, 적용계수 20을 선택한 개도국은 해당 품목이 자국의 비농산물총수입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16%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농산물 전체 세번의 14%까지 일반 감축률의 50%를 적용하거나 또는 해당 품목이 자국의 비농산물총수입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농산물 전체 세번의 6.5%까지 감축 면제를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선택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적용계수 22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표 1과 같이 우대 조치를 부여 받을 수 있으나 개도국이 적용계수 25를 선택하면 우대조치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개도국의 우대조치 집중사용 방지 조항으로 HS 2 단위별로 최소 20%, 세번수 또는 최소 9% 수입액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감축률 적용을 의무화할 것을 잠정타협안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2) 분야별 자유화

분야별 자유화는 NAMA분야의 주요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공식에 의한 일반적인 관세감축 이외 특정 공산품 분야를 선정해서 관세를 철폐하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를 분야별 자유화라고 한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는 세계 무역에서 해당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생산량 또는 교역량)을 포함한 임계수준(critical mass),⁷⁾ 협상 분야 및 관세철폐 기간,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등을 논의해 왔다. 무역자유화를 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분야별 자유화 관련 free-rider를 가급적 줄이는 등 의미있는 분야별 자유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예를 들어, 세계 무역액의 90%를 분야별 자유화 논의의 출발조건으로 설정하여, 주요국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

표 2. 우리나라의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 현황.

구분	분야
적극 참여	전기·전자, 자동차, 보석
소극적 참여	의약품·의료기기, 자전거, 화학, 스포츠용품, 기초원자재, 섬유, 의류, 신발
불참	임산물, 수산물

다. 이번 잠정타협안에서 분야별 자유화는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되, WTO 주요 회원국(추후 논의하여 확정)들은 최소한 2개 이상의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하는 개도국에게는 관세감축에서 추가적인 신축성(감축공식계수를 상향 조정)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자발적 참여 원칙을 강조하면서 반대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인 문안 수정을 협의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임산물 분야의 자유화에 대해 우리나라는 불참하고 있으나 미국 등 분야별 주도국들은 자국의 관련업계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분야별 자유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3. 잠정타협안에 의한 목재류 영향 분석

WTO/DDA협상의 잠정타협안에 제시된 NAMA분야 세부원칙을 근거로 목재류에 대한 관세 감축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요 목재류인 제재목, 합판, PB, 섬유판에 대해서 수입량 및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제재목, 합판, PB, 섬유판 등 HS 10단위 228개 목재류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기존의 양허품목에 대해서는 협정관세율을, 미양허품목(합판, PB, 섬유판)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14일에 적용한 실행세율에 mark up 25를 적용하여 품목별 관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 감축 변화가 주요 임산물의 수급에 미

⁵⁾ MFN(최혜국대우; Most Favored Nation) 이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1조에 규정된 최혜국대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국가에 주어지는 무역상의 혜택이나 제한은 자동적으로 다른 회원국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⁶⁾ 미양허품목의 실행세율에 대해 일정 수치를 mark-up한다는 점에서 constant하고, 이를 통해 높은 실행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세율로, 낮은 실행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세율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non-linear 방식이라고 한다.

⁷⁾ 임계수준이란 교역량 또는 생산량의 일정 비율(예, 90%)에 해당하는 회원국들이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국가들 간에 분야별 자유화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표 3. 잠정타협안에 의한 목재류 양허품목의 관세 변화(양허세율 기준, %).

주요 품목	양허세율*1	적용세율*2	협상타결시 최종 세율			
			선진국 적용계수		개도국 적용계수	
			8	20	22	25
원목(활엽수), 목탄 등 36개	2.0	0.0, 2.0	1.60	1.82	1.83	1.85
로진, 목초액	6.5	6.5	3.59	4.91	5.02	5.16
제재목, 단판 등 74개	10.0	5.0, 3.0*3	4.44	6.67	6.88	7.14
성형목재, 창문틀 등 55개	13.0	8.0	4.95	7.88	8.17	8.55

주: 1. 양허세율은 UR 협정 세율임.

2. 적용세율은 2008년도에 수입관세로 적용한 세율이며, 땀나무, 목탄 등은 2.0%임.

3. 단판은 활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3.0%를 적용하고 있음.

치는 영향은 2008년 7월 29일에 주요 7개국(G-7; 미국, EU, 인도, 브라질, 호주, 일본, 중국)간에 도출된 잠정타협안의 관세인하공식 적용계수를 선진국과 개도국 지위별 적용계수를 이용하여 산출된 세율을 현행 실행세율과 비교, 분석하였다.

잠정타협안에 의한 목재류의 주요 품목별 관세 감축변화는 양허세율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양허품목인 제재목, 목재가공품 등의 협상타결 후 최종관세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일 경우(적용계수=8) 제재목은 10%에서 4.44%로 이행기간 동안 5.56%p를 균등 감축해야 하며, 목재가공품은 13%에서 4.95%로 이행기간 동안 8.05%p를 균등 감축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가 되고 적용계수의 선택을 22로 하는 경우, 제재목은 10%에서 6.88%로 이행기간 동안 3.12%p를 균등 감축해야 하고, 목재가공품은 13%에서 8.17%로 마찬가지로 4.83%p를 균등 감축 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실행세율 5%가 적용되고 있는 제재목의 경우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가 되더라도 현재 실행세율에서 불과 0.56%p를 이행기간 동안 감축해야한다. 예를 들어, 이행기간이 5년으로 합의된다면, 매년 0.11%씩 균등 감축을 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관세 감축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8년 실행세율이 8%인 성형목재, 창문틀 등의 목재가공품의 경우에도 선진국 지위가 되더라도 현재 실행세율에서 3.05%p를 균등 감축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균등 감축을 5년 동안 이행해야 한다면 매년 0.61%씩 감축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재가공품의 경우 현재의 실행세율에서 약 38%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관세감축에 의한 영향은 다소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양허세율이 10.0%인 단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일 경우 최종세율은 4.44%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현재 단판에 적용하고 있는 실행세율이 3%이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타결 후 최종 관세가 더 높아져서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로 될 경우 선택하게 되어 있는 3개의 적용계수 즉, 20, 22, 25 중 어느 것을 선택하

더라도 양허품목중 제재목, 단판, 성형목재, 창문틀 등은 협상타결 후의 적용세율이 현재의 세율보다 높아져 관세 감축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로진, 목초액, 목탄 등은 협상타결 후의 최종세율이 현재의 적용세율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개도국의 경우에는 이행기간이 선진국지위일 때보다 보다 길게 주어지기 때문에 만일 개도국의 이행기간이 10년으로 된다면 매년 불과 0.16%~0.02%p 정도의 관세를 감축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 감축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UR협상 타결시 미양허품목인 6 mm 이상 합판, PB, MDF 등 65개 품목은 이번 DDA협상에서는 모두 양허하기로 2005년 홍콩각료회의에서 합의되었다. 따라서 이들 품목의 관세는 2001년 11월 14일에 적용한 실행관세에 mark up 25를 적용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일 경우 두께 6 mm 이상 합판은 13%(우리나라는 합판의 기본세율을 8%로 하고 있지만, 2001년 당시 조정관세를 적용하여 13%를 부과하였음)에서 협상타결 후 최종세율이 6.61%로 되며, PB와 섬유판은 협상타결 후 최종세율이 6.44%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B와 섬유판의 2008년 실행세율이 8%로 협상타결로 인한 관세감축은 이행기간 동안 불과 1.56%p 하락되어 선진국의 이행기간이 5년이라면 매년 0.3%p 정도를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관세감축 이행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두께 6 mm 이상의 합판은 2008년 조정세율이 11%여서 실질적으로 이행기간 동안 4.39%p를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일 선진국의 이행기간이 5년이라면 6 mm 이상의 합판의 경우 매년 0.9%p 정도 관세를 감축해야 한다. 따라서 DDA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감축 변화는 PB, 섬유판 보다는 합판의 관세 감축 변화가 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로 인정되는 경우 개도국 적용계수 즉, 20, 22, 25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협상타결 후 최종세율은 2008년도의 적용세율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PB, MDF의 현재 적용세율이 8%인데 반하여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일 경우에는 표 4

표 4. 잠정타협안에 의한 목재류 미양허품목의 관세변화(실행세율 기준, %).

품 목	실행세율*1	적용세율*2	협상타결시 최종 세율			
			선진국 적용계수		개도국 적용계수	
			8	20	22	25
PB, MDF	8.0	8.0	6.44	12.45	13.20	14.22
6mm이상 합판	13.0	11.0	6.61	13.10	13.93	15.08

주 : 1. 실행세율은 2001년 11월 14일의 MFN 실행세율임.

2. 적용세율은 2008년도에 적용하고 있는 세율임.

3. 미양허품목의 관세감축 변화는 MFN 실행세율(2001) + mark up 25를 적용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용계수에 따라 12.45, 13.20, 14.22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mm이상 합판도 현재의 적용세율이 11%인데 반하여 마찬가지로 13.10, 13.93, 15.08이 된다. 따라서 DDA협상 타결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로 인정된다면 주요 품목인 합판, PB, MDF는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DDA협상에 의한 관세인하에 따른 주요 품목(제재목, 합판, PB, MDF)의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2006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산림자원의 장기수급예측 통합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08년 현재 분석

대상품목의 실행 관세율의 변화에 의한 가격변화율을 구한 후, 해당 품목의 2003년~2005년까지 3년간의 평균 가격을 이용하여 관세인하에 의한 가격 하락분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분석 대상품목에 대한 선행연구의 탄성치 즉, 대상품목에 대한 수요와 공급 탄성치 자료(주린원 등, 2007) 및 2003~2005년 동안의 평균 가격과 소비량 및 생산량을 이용하여 관세인하에 의한 수급 물량의 증감분을 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들 자료들을 이용하여 실행관세율의 인하가 수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관세인하에 의한 가격변화율은 {(관세인하후 관세포함수입단가)/(관세인하전 관세포함수입단가)}

표 5. 우리나라의 지위별 주요 품목의 영향 분석.

- 선진국 지위

품 목	가격하락 (원/m ³)	수요량 증가 (천m ³)	생산량 감소 (천m ³)	수입량 증가 (천m ³)	
제재목	칩엽수	1,202	8.2	12.1	20.3
	활엽수	3,921	2.0	0.5	2.6
합판	14,986	9.1	7.4	16.5	
PB	2,449	17.1	4.3	21.4	
MDF	3,771	55.3	4.2	59.5	

- 개도국 지위

적용 계수	품 목	가격증가 (원/m ³)	수요량 감소 (천m ³)	생산량 증가 (천m ³)	수입량 감소 (천m ³)	
20	제재목	칩엽수	3,606	24.6	36.2	60.8
		활엽수	11,764	6.1	1.6	7.8
	합판	7,178	4.4	3.6	7.9	
	PB	6,986	48.8	12.2	61.0	
	MDF	10,758	157.8	11.9	169.7	
22	제재목	칩엽수	4,056	27.7	40.7	68.4
		활엽수	13,235	6.9	1.8	8.7
	합판	10,010	6.1	5.0	11.0	
	PB	8,159	57.0	14.3	71.3	
	MDF	12,563	184.3	13.9	198.2	
25	제재목	칩엽수	4,636	31.6	46.5	78.1
		활엽수	15,125	7.9	2.1	10.0
	합판	13,921	8.4	6.9	15.3	
	PB	9,766	68.3	17.1	85.3	
	MDF	15,038	220.6	16.6	237.2	

-1}에 의해 계산하였다. 즉,

$$\Delta P = \frac{t-t_0}{100+t_0} \times 100$$

으로 여기서 ΔP 는 가격변화율(%), t_0 는 현행 실행관세율(%), t 는 협상타결 후 최종 실행관세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제재목과 합판, PB, 섬유관 등 목질패널류를 대상으로 관세인하에 따른 품목별 수입량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가 선진국지위일 경우와 개도국지위일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즉, 우리나라가 선진국지위시 MDF의 경우, 관세율 인하에 의한 국내가격의 하락으로 수입량은 약 59.5천 m^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2003년~2005년의 3년 평균 수입물량 대비 1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량은 수입량의 증가로 4.2천 m^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3년 평균(2003~2005) 생산량 대비 약 0.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PB의 경우도 관세율 인하에 의한 국내가격의 하락으로 수입량은 약 21.4천 m^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3년 평균(2003년~2005년) 수입물량 대비 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량은 수입량의 증가로 4.3천 m^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3년 평균(2003~2005) 생산량 대비 약 0.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합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입량은 약 16.5천 m^3 증가하여 이는 3년 평균(2003년~2005년) 수입물량 대비 1.8% 증가하며, 생산량은 관세율 인하에 의한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량의 증가로 7.4천 m^3 감소하여 3년 평균(2003~2005) 생산량 대비 약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목질패널류중 MDF나 PB에 비해 국내 생산량에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로 될 경우에는 협상 타결 후 최종관세가 2008년도의 적용세율(조정세율 포함)보다 높아져 협상 타결 후 관세감축 변화에 의한 품목별 수입량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 목재류의 품목별 수입량 증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지위일 경우에는 0.8%~13.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개도국지위(적용계수 22 선택시)일 경우에는 오히려 0.8%~44.3%까지 수입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협상 각료선언문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출범한 WTO/DDA협상은 당시에는 2005년 1월 1일 협상을 타결하기로 하였지만 협상이 시작된 이후 당초 합의 시한을 넘겨 7년이 지난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간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관세감축, 농업 보조금 감축

에 대해 미국, EU와 브라질·인도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 등 이해 관련 그룹들 간에 주요 핵심쟁점에 대한 커다란 입장 차이로 여러 차례의 교착과 진전이 반복되면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WTO/DDA협상 타결을 위해 2008년 7월에 개최된 주요국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이 제안하여 회원국들간에 합의된 잠정타협안 세부원칙을 중심으로 주요 논의 협상 동향,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고 이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품목의 생산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잠정타협안에 의한 목재류의 주요 품목별 관세 감축은 양허세율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양허품목인 제재목, 목재 가공품의 협상타결 후 최종관세율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일 경우 2008년 현재 실행세율이 5%인 제재목은 협상 타결시 최종세율이 4.44%로 이행기간 동안 불과 0.56%p가 하락되어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행세율이 8%인 창문 틀 등 성형목재는 협상 타결시 최종세율이 4.95%로 되어 관세감축에 의한 영향은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로 될 경우 선택하게 되어 있는 3개의 적용계수 즉, 20, 22, 25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양허품목중 제재목, 단판, 성형목재, 창문틀 등은 협상타결 후의 적용세율이 현재의 세율보다 높아져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로진, 목초액, 목탄 등은 협상타결 후의 최종세율이 현재의 적용세율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개도국의 경우에는 이행기간이 선진국지위일 때보다 보다 길게 주어지기 때문에 만일 개도국의 이행기간이 10년으로 된다면 매년 불과 0.16%~0.02%p 정도의 관세를 감축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 감축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양허품목인 6 mm이상 합판, PB, MDF의 경우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시 2008년 실행세율이 8%인 PB와 섬유관은 협상타결시 최종세율이 6.44%로 되어 이행기간 동안 관세감축은 불과 1.56%p 하락되어 감축이행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6 mm이상 합판의 경우에는 11%(2008년 실행세율)에서 협상타결시 최종세율이 6.61%로 되어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은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로 인정되는 경우 개도국 적용계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협상타결 후 최종세율은 2008년도의 적용세율보다 높아져 주요 품목인 합판, PB, MDF는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가 선진국지위시 목재류의 관세인하에 따른 품목별 수입량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 수입량의 증가가 0.8%~13.3%로 나타난 반면에,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로 인정되는 경우 개도국 적용계수의 선택에 따라 협상 타결후 최종 세율이 2008년도의 적용세율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아져서 개도국지위(적용계수 22 선택시) 일 경우에는 오히려 0.8%~44.3%까지 수입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잠정타협안의 관세감축 변화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할 때 그렇다는 것이며 향후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관세인하 목표 및 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협상의 논의를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 확보를 위한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후 협상기본 전략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임업부문으로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상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DDA협상 의제별로 입장이 유사한 주요 국가들과의 공조체제를 통한 대응전략 추진을 위해 주요국들의 입장변화 및 협상전략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상호 공조체제를 강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용문헌

1. 강문성, 강준구, 박지현, 김정근. 2005. WTO/DDA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정책토론회 시리즈 05-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60pp.
2. 서진교. 2008. WTO의 DDA협상 결렬의 평가와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Vol. 8. No. 28. 11pp.
3. 석헌덕, 장철수, 이상민. 2004. WTO/DDA협상에 따른 임산물에 대한 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4-43. 82pp.
4. 이성연, 박경석, 주린원, 김의경, 정병현, 전현선, 백을선, 김외정. 2002. WTO 협상과 임업분야의 대응방안. 임업연구원. 연구신서 제2호. 495pp.
5. 이성연, 주린원. 2005. WTO/DDA 목재류분야 협상의 최근 동향.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제248호. 137pp.
6. 이성연, 정병현, 송영근, 김세빈, 광경호. 2008. WTO/

- DDA협상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의 목재류의 주요 쟁점 및 관세 감축 영향. 한국임학회지 97(4호): 408-416.
7. 이재기. 2005. 세계화 · WTO · FTA 포커스. 한울출판사. 322pp.
 8. 장우환, 김주수, 이한성, 권용덕, 이현지, 성동현, ning마음. 2005. DDA/ FTA협상에 따른 임업피해액 산정 및 국내지원 대책연구. 산림청 용역과제(경북대학교 농업과 학기술연구소 수행). pp. 202.
 9. 재정경제부. 2007. 할당관세(2008년 상반기) 및 조정관세(2008년) 운용계획. 산업관세과. p10.
 10. 정병현, 이성연, 주린원. 2005. WTO/DDA 농업협상의 논의 쟁점과 단기소득임산물분야의 대응방향.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제254호. 116pp.
 11. 정종인, 이한영. 2000.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구조 비교분석과 중국의 WTO가입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 한은조사연구 2000-4. 한국은행조사국. 30pp.
 12. 주린원, 이성연, 김외정. 2001. WTO 차기 임산물협상의 예상 쟁점 및 영향. 한국임학회지 90(4호): 505-512.
 13. 주린원, 정병현, 이성연, 김철상, 배재수, 이경학, 김경하, 김재준, 박찬우, 한상열, 김의경, 최 관, 윤여창. 2007. 산림부문의 추세 및 장기전망.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07-19. 169-184.
 13. WTO. 2003. Draft Elements of Modalities for Negotiations on Non-agricultural Products. TN/MA/W/35/Rev.1.
 14. WTO. 2005. DOHA WORK PROGRAMME Ministerial Declaration(Adopted on 18 December 2005). Annex B; 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 MINISTERIAL CONFERENCE Sixth Session Hong Kong, 13-18 Dec. 2005. WT/MIN(05)/DEC.
 15. WTO. 2006. Towards NAMA Modalities. JOB(06)/200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22 June 2006).
 16. WTO. 2007. Chairman's Introduction to the Draft NAMA Modalities.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17 July 2007.
 17. WTO. 2008. 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 JOB(08)/96. 2008.8.12. 15pp.
 18. WTO. <http://www.wto.org>

(2009년 5월 14일 접수; 2009년 8월 31일 채택)